

[죽전] 2019학년도 1학기 대학(원)생 예비군 편성(신고) 제외 및 신고자 안내

1. 신고 제외자

- 가. 졸업유예자 :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,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,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
- 나. 유급자 또는 제적자 : 미등록자, 자퇴자, 휴학경과자, 학사경고, 유급제적,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(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)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
- 다. 예비군 관련 조치사항 : 학교예비군 편성 불가【보류해제 및 전출, 즉,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】, 불임 파일 참조.

2. 신고 대상자(신고 기간 및 방법 포함)

가. 신고 대상자

- 1) 2019-1학기 복학생 · 신입생 · 재입학생 · 재수복교생 예비군 모두(대학원생 포함)
 - 2) 우리(단국)대학교 학부 졸업후 본(단국)대학교 대학원(일반/특수/전문)에 입학
 - 3) 우리(단국)대학교 대학원(일반/특수/전문)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예비군
- 나. 신고 기간 : 2019. 1. 7(월) ~ 3. 8(금)
- 다. 신고 방법 :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(학사지원) 예비군 신고
【홈페이지 로그인→웹정보시스템→학사지원→예비군→예비군편성신고
(예비군편성등록 란을 정확히 기입 필수)→저장】

3. 문의처 : 죽전캠퍼스 예비군 훈련팀 [031-8005-2435~2437]

붙임 1 : 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”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다.

붙임 2 : 학교예비군 편성 제외자의 신분별·연차별 예비군 훈련시간

불임 1

“대학생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”는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실시합니다.

□ 왜 변경이 되었나요?

대학생 예비군 중에서 대학교 수업연한이 경과하고도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**유급 대학생은 당초 수업연한 내의 학생에게 학습권 보장을 위해** 훈련을 일부면제하고 있는 취지와 일반예비군과의 훈련 형평성에 맞지 않아 14년부터 해당 신분과 연차에 맞게 훈련을 부과함

□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?

○기존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대상자를 관리해 왔으나,
학생 훈련을 받지 않으므로 거주지의 예비군부대에서
자원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부과함

□ 구체적인 훈련방법은?

○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신분·연차별 훈련을 실시함.
○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 중
장교·부사관은 1~6년차, 병은 1~4년차에 대하여
연 1회 2박 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
○동원 미지정자 중
장교·부사관은 2박 3일의 동원미참자 교육을,
병은 32시간의 미참자 교육을 실시
○동원훈련을 연기하거나 불응한 사람은 소집부대별로 재입영하여
훈련을 받거나 동원미참자 교육(32시간)을 받음

□ 해당 예비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○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/대학직장 예비군부대에 문의
○동원지정된 예비군의 훈련일정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

불임 2

※ 신분별·연차별 예비군 훈련 시간(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만 해당)

구분		계	동원 훈련	동미참 훈련	향방기본 훈련	향방작계 훈련	예비 시간
신규 전역자(간부/병)							160
병	1~4년차	동원지정자	2박3일				132
				32시간			128
	5~6년차	동원지정자			8시간	6시간	142
					8시간	12시간 (6H×2)	140
	7~8년차						160
	간부	1~6년차	2박3일				132
				2박3일			132
		7~8년차					160
160							